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66
------------	-------

발의연월일 : 2019. 1. 31.

발의자 : 이현승 · 정태옥 · 박맹우

추경호 · 정갑윤 · 박명재

김무성 · 홍문종 · 이장우

윤상직 · 이양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강릉 KTX 열차 탈선 사고 발생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강릉 구간을 운행하는 총 15대의 KTX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선로전환기 주변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또한 작동하지 않던 것으로 밝혀져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 및 동력차에 영상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철도 사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처를 도모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3제1항, 제81조제1항제10호의2).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의3의 제목 중 “장착”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과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u>장착</u> 등)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u>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 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② ~ ⑦ (생략)</p> <p>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0. (생략)  <u>&lt;신 설&gt;</u></p> <p>11. ~ 18.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u>설치·운영</u> 등) ① -----  -----  -----  -----  <u>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과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81조(과태료) ①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u></p> <p>11. ~ 18.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